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제조사·공급사 : (주)비엘이엔아이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6,689,85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단, 본 사업은 법적규제 대상이므로 안전운영을 위해 제조사·공급사의 측정기에 대한 소정의 운영 교육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낙찰자로 제한 한다.

2022 년 11 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제조사 · 공급사명 : (주) 비엘이엔아이



물품 공급·기술 지원 협약서

- 사업 명 :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 용역
- 발 주 기 관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 제조사·공급사 : 에이티티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 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 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 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 8,000,000원으로 한다. (단, 재료비(시약)제외)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2년 11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제조사·공급사 : 에이티티 주식회사



붙임 : 협약 대상 물품 원가 내역서 1부

창원시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용역
- 발 주 기 관 : 경상남도 창원시
- 제조사·공급사 : 한창기전(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23년 덕동물재생센터 수질TMS 유지보수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협약의 범위) ① 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 위 물품 중 제조사·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규격서(설계설명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과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공급사의 물품공급·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한 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으로 한다(단, 재료비(시약)제외)

제4조(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와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물품공급·기술지원을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공급사는 물품공급·기술지원 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단, 본 사업은 법적규제 대상이므로 안전운영을 위해 제조사·공급사의 측정기에 대한 소정의 운영 교육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낙찰자로 제한 한다.

2022 년 11 월 일

발 주 기 관 명 : 창원시 하수도사업소

제조사 · 공급사명 : (주) 한 창 기 전 (인)

창원시
하수도
사업소



창원시
하수도
사업소장인

